2026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

[2026. 9. 1.(화), 인권센터]

1 폭력예방교육 개요

□ 관련 근거

○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
○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
○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
○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
○ 전북대학교 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6조

□ 교육목표

○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희롱·성매매·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
○ 인권 청정 캠퍼스, 자랑스러운 전북대학교 조성
○ 타인에 대한 인권 존중과 성평등이 구현되는 대학 문화 조성

□ 교육대상

○ 교원: 전임교원, 비전임교원(겸임교원, 시간강사 등을 모두 포함)
○ 직원: 공무원, 대학회계직 등 전체 직원(연구원, 계약직, 사회복무요원, 교육행정인턴 등 전북대학교에 속한 정규직 및 비정규직 전부 포함)
○ 학생: 대학생, 대학원생(대학 정보공시에 준함)
○ 법정의무교육 분야별 교육 대상

구분	폭력예방교육 분야			
	성희롱	성매매	성폭력	가정폭력
교원	해당	해당	해당	해당
직원	해당	해당	해당	해당
학생	해당 없음	해당 없음	해당	해당

□ 교육시간

○ 성폭력, 성희롱, 성매매, 가정폭력 등 각 분야별 1시간 이상 실시

2 폭력예방교육 운영 및 실적 제출 안내

폭력예방교육은 **법정의무교육**으로 교내 구성원은 연내에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, 각 부서 및 학과에서는 자체 교육, 온라인 교육 등 방법을 택하여 교육을 실시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.

□ 교육기간 및 실적 제출 방법

○ 교육기간: 2026. 1. 1.(목) ~ 12. 31.(목)

※ 단, 신규 임용된 교직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임용 2개월 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함

○ 실적(이수증) 제출방법

구분		외부교육	LMS(온라인)	부서별 자체 교육
제출 방법	기존	부서별 이수 현황 및 이수증 사본 공문 제출	제출서류 없음	[붙임2] 이수 현황 및 [붙임3] 증빙 전체 공문 제출
	변경	**개인별 이수증 제출 ※ 제출방법 [붙임5] 참고**		
비고			변동없음	변동없음

○ 제출기한: 2027. 1. 6.(수) ※ 부서평가 대상 부서는 2027. 1. 4.(월)까지

□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

○ 외부교육(나라배움터 등)

1) 실적 인정기준

- 나라배움터 등 외부교육수료 수료증 제출
- 인적사항 및 폭력예방교육 분야별 1시간 이상 교육 이수 명시

2) 실적(이수증) 제출방법: JUMP에 개인별 이수증 제출(붙임5 참고)

3) 직원 상시 학습 인정: 개인이 코러스「교육훈련 실적관리」메뉴를 통해 수료증 직접 제출

[온라인 교육 사이트 안내]

교육 사이트	이용 대상	과정명
전북대학교 나라배움터 (http://jeonbukac.nhi.go.kr)	공무원, 대학회계직 등	평등한 일상, 폭력예방교육(일반)
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(neti.go.kr)	교직원 등	(4대 폭력 예방 교육)평등한 일상, 폭력예방교육
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(https://www.kigepe.or.kr/eleaming)	교직원 등	1. 모두의 약속, 폭력예방교육(대학) [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 예방] 2. 서로를 위한 폭력예방교육(대학) [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 예방]

※ 회원가입 후 교육 수강 후 이수증 발급(인적사항 및 이수 시간 확인 가능해야 함)

○ 부서·학과별 자체 교육

1) 교육대상: 교원, 직원, 학생

2) 교육방법: 시청각 교육, 강사 초빙 강의 등 부서 및 학과별 여건에 따라 개별 실시

3) 실적 제출방법: [붙임2] 이수 현황, [붙임3] 교육계획서, 결과보고서, 서명부, 강사 프로필(강사 활용 시) 등 공문 제출

※교육계획서, 결과보고서는 학과 및 부서 내부결재 공문과 함께 제출

※교육계획서 결재 시, 인권센터 담당자 "한완규" 협조 결재

4) 직원 상시 학습 인정: 인권센터에서 교육실적 취합하여 총무과에 일괄 인정 요청(2027년 1월 중)

5) 주의사항: 성평등가족부 점검 및 교육부 감사 시 자체교육을 운영한 부서 또는 학과의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.

[시청각 교육-성평등가족부 지정 추천 콘텐츠 활용]

-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(https://www.mogef.go.kr/): 유형별 서비스-교육정보-교육자료실-폭력예방교육자료-서로를 위한 폭력예방교육(대학) 자료 활용
- 예방교육통합관리(https://shp.mogef.go.kr/): 폭력예방교육 소개-자료실-교육자료실-서로를 위한 폭력예방교육(대학) 자료 활용

○ 인권센터 온라인 교육 운영(LMS 폭력예방교육)

1) 교육대상: 교원, 직원, 학생

2) 교육기간: 2026. 1. 1.(목) ~ 12. 31.(목) ※ 현재 정상적으로 이수 가능

3) 교육방법: 폭력예방교육 콘텐츠를 교내 LMS 시스템에 강좌 형태로 탑재

4) 실적(이수증) 제출방법: 해당없음(인권센터에서 입력)

5) 직원 상시 학습 인정: 인권센터에서 교육실적 취합하여 총무과에 일괄 인정 요청(2027년 1월 중)

○ 인권센터 주관 폭력예방교육

1) 교육대상: 교원, 직원

2) 교육방법: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정 전문강사 초빙하여 운영

3) 운영횟수: 연중 1회

4) 교육일시: 별도 계획 수립하여 안내 예정

5) 직원 상시 학습 인정: 인권센터에서 교육실적 취합하여 총무과에 일괄 인정 요청(2027년 1월 중)

○ 고위직 맞춤형 별도 교육

1) 교육대상: 고위직 교원

2) 교육방법: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정 전문강사 초빙하여 운영

3) 운영횟수: 연중 2회(예정)

4) 교육일시: 유관부서 협의 후 별도 계획 수립하여 운영

3 성희롱 · 성폭력 방지조치 안내

□ 목적

○ 교내 성희롱·성폭력 방지조치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및 방지 체계 구축

□ 법적근거

○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1조(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)

○「양성평등기본법」 시행령 제20조(성희롱 방지조치 등)

□ 고충상담창구 설치

○「고등교육법」, 「전북대학교 학칙」 및「인권센터 운영 규정」에 따른 인권센터 설치

○ 설치 장소

- 오프라인: 전북대학교 대학본부 별관 203호(구. 법대2호관 2층)
- 온라인: 학교 홈페이지 배너 교내 성희롱·성폭력·인권침해 신고 및 교육부「교육분야 성희롱·성폭력 신고센터」 연동

○ 인권센터 기능(고등교육법 제19조의3 2항)

-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,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시정 권고 또는 의견 표명
-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
- 성희롱·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
- 그 밖에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○ 인권센터 홈페이지: https://hrc.jbnu.ac.kr/

□ 성희롱·성폭력 고충상담원 안내

※ 3년 이내 고충상담원 교육을 이수한 자를 1명 이상 포함, 피해자가 고충 신청 및 상담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남, 여 각 1인 이상 직원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

○ 고충상담원 지정 현황

순	성별	소속	연락처	이메일
1	남	인권센터	☏ 063-270-3025	humanrights3004@jbnu.ac.kr
2	여	인권센터	☏ 063-270-3026	

○ 성희롱·성폭력 및 인권침해 피해자는 인권센터를 방문하거나, 전화 또는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 가능 ※ 개인 신상 정보와 상담 내용은 비밀보장

□ 성희롱·성폭력 예방지침 마련

○ 인권센터 운영 규정(전북대학교 규정 제2889호) 운용

-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5호 반영

성희롱 고충 처리 창구 운영,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, 징계 등 제재 조치, 피해자 불이익 조치 금지,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, 피해자 보호 조치(임시조치)에 관한 사항, 고충상담원 교육·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등

○ 전북대학교 성희롱·성폭력 예방지침 제정 및 운용

- 성평등가족부 및 교육부 매뉴얼을 준용하였으며, 학내 구성원 의견을 조회하여 제정

[인권침해 구제 절차 안내]

○ 성희롱·성폭력 및 인권침해 신고 시, 아래와 같은 구제 절차 진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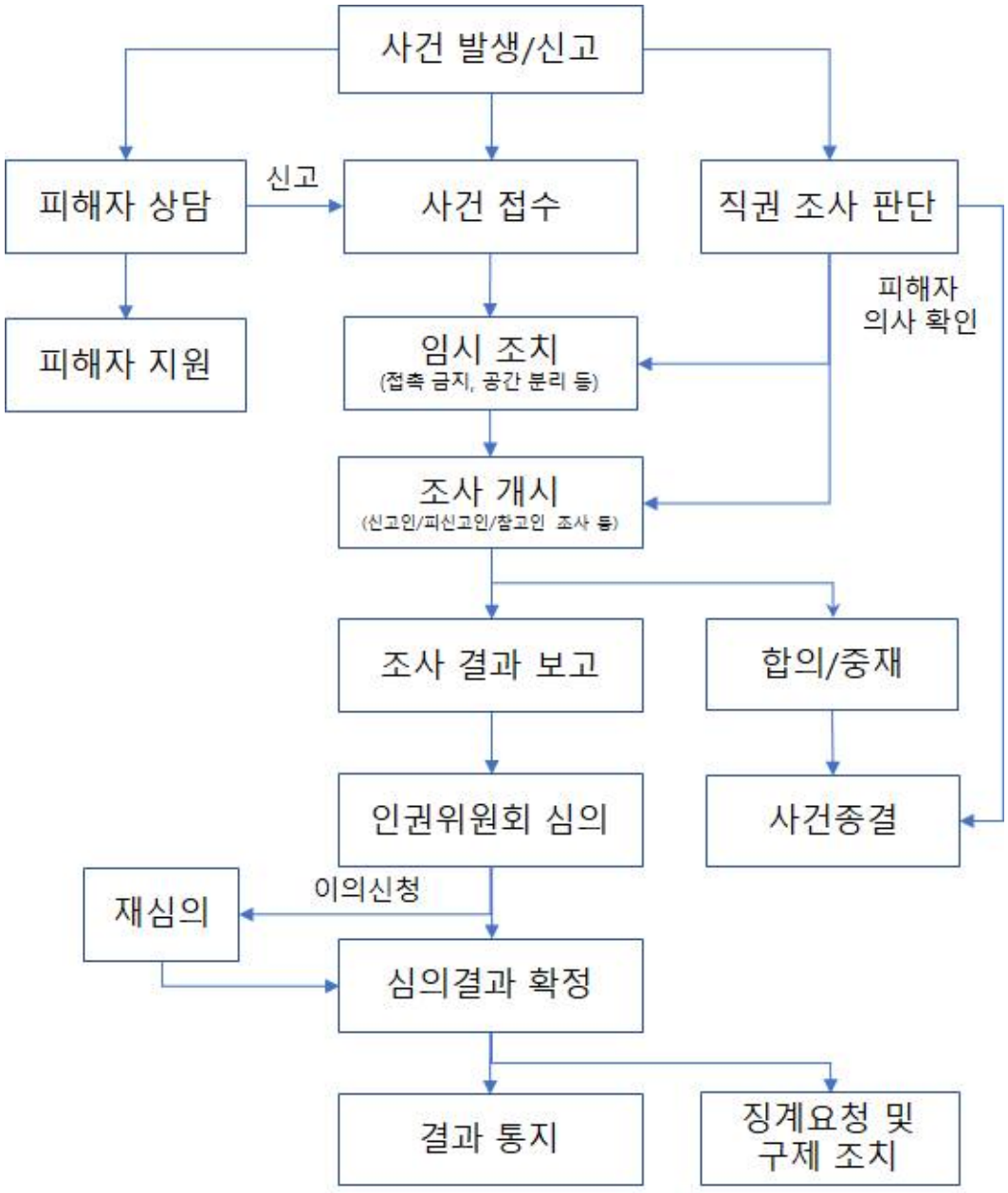

2026년 폭력예방교육 Q&A

2026. 9. 1.

Q: 폭력예방교육을 작년에 들었는데 올해도 들어야 하나요?

A: 네. 폭력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전북대 구성원이라면 매년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므로, 당해연도 이전 폭력예방교육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
Q: 직원이 다른 교육 이수 없이 성희롱 예방교육만 2시간 이수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?

A: 폭력예방교육은 4개 분야(성희롱, 성매매, 성폭력, 가정폭력)을 각각 1시간 이상 이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성희롱 예방 교육만 2시간 이수한 경우 4개 분야 중 성희롱만 이수가 인정되고 나머지 분야는 미이수 상태로 처리됩니다.

Q: 신규임용자의 경우 임용 2개월 이내에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있는데, 임용 전에 교육을 이수한 실적이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?

A: 당해연도 교육 실적이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2025. 9. 1.자 신규임용자가 2025. 3. 1.에 교육을 이수한 증빙이 있으면 신규임용자 교육 이수로 인정됩니다. 다만, 해당년도 실적이 아닌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

Q: 폭력예방교육 의무화제도는 무엇인가요?

A: 우리 대학은 교육 이수 독려를 위해 **현재 교원 승진, 재임용 및 교내 평가(교수업적평가, 학과평가, 부서평가) 성적장학금, 성적조회 등 다양한 분야에 폭력예방교육 이수여부를 반영**하고 있습니다.

Q: 올해 폭력예방교육을 2번 이상 들으면 우리 학과(부서)의 이수율이 더 올라가나요?

A: 아닙니다. 폭력예방교육 실적은 개인별 이수 여부를 확인하므로 동일인이 교육을 여러 번 들었다고 해서 이수율에 추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.

Q: 올해 상반기에 대학원생 신분으로 교육을 이수했는데, 하반기에 조교로 임용이 되었다면 교육을 다시 들어야하나요?

A: 대학원생으로 이수한 교육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. 성평등가족부 지침상 대학원생은 학생으로, 조교는 공공기관 종사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학생용 커리큘럼을 이수했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인권센터로 문의 바랍니다.

Q: 외부 사이버교육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수강해서 과정은 다 들었지만 시험점수가 미달이어서 이수증을 못 받았는데 인정이 안되나요?

A: 네. 외부 교육은 반드시 공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교육실적을 인정합니다. 단순 화면 캡처, 사진 등으로는 외부 교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.

Q: 비전임교원이 다른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전북대에서 다시 이수해야 하나요?

A: 아닙니다. 다른 대학교 또는 다른 기관에서 당해연도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 공식 증빙(교육 이수증, 이수 확인서 등)을 JUMP(통합정보시스템)를 통해 제출하면 외부 교육 이수자로 인정되지만 **수강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**

Q: 학과에서 소속 학생들의 폭력예방교육 이수 현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?

A: 현재 JUMP에서 학과별 이수 현황을 [원스탑-비교과-의무교육관리-의무교육실적조회] 메뉴에서 각 학과 조교 선생님이 확인할 수 있으며, 같은 메뉴에서 개인이 직접 조회도 가능합니다.

Q: 인권센터에서 주관하는 특강 또는 온라인 교육을 들은 구성원의 실적을 학과 또는 부서에서 제출해야 하나요?

A: 아닙니다. 각 학과 또는 부서에서 인권센터에 제출하는 교육실적은 부서 자체교육 실적만 해당합니다. 외부교육(전북대 나라배움터 포함)은 JUMP를 통해 개별 제출합니다.

Q: 교육 기간이 1년인데 올해 폭력예방교육 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?

A: 성평등가족부 지침상 대상 기준 인원만 당해연도 4월 정보공시를 기준으로 하고, 실제 교육 대상자는 전체 재학생 및 재직자입니다. 따라서 휴복학 등의 변동으로 이수 실적이 100%를 넘는 경우가 드물게 있을 수 있습니다.

Q: 학과 또는 부서에서 전체 교직원이 모이는 일정을 잡기 어려워 교육자료를 나눠주고 각자 연구실 및 사무실 등에서 시청해도 교육으로 인정되나요?

A: 성평등가족부 지침 상 단순 자료 배포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제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온라인 LMS교육 또는 외부 사이버교육(나라배움터 및 중앙교육연수원)을 권장합니다.

Q: 인권센터에서 실적을 취합하는 교육(온라인 LMS 교육, 특강, 부서자체교육 등)의 직원 상시학습은 언제 인정되나요?

A: 인권센터에서 관리하는 폭력예방교육 실적은 해당년도 교육기간 종료 후 일괄 취합 후 익년 1월 중 총무과에서 상시 학습으로 인정됩니다.

Q: 나라배움터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JUMP에 수료증을 제출했는데, 직원 상시학습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.

A: 외부교육(나라배움터, 중앙교육연수원 등)은 개인이 직접 코러스에 교육실적을 등록하여 총무과에서 직원 상시학습을 인정받아야 합니다(전북대 나라배움터는 제외).

문의 : 인권센터(☎270-3025)